

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인생이모작지원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현 수탁법인의 노인관련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·운영
- 나. 시설 개요
 - 시설명 :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
 - 소재지 :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(종암동 66-14)
 - 시설규모 : 대지 1,088㎡, 건물 2,595㎡(지하1층~지상5층)
 - 준공일자 : 1999. 6. 30
 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만60세이상 어르신
- 다. 주요위탁 내용
 - 위탁기간 : 5년 (2017.08.09 ~ 2022.08.08.)
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- 위탁업무
 -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·운영
 -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·사회교육·기능회복·재가노인·복리후생·지역 복지사업
 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- 소요예산 : 1,568,190천원(2018년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 - 노인복지법 제36조의 1(노인여가복지시설)
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2조(정의) 및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제12조(재계약)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1차 : 1999.08.09 ~ 2002.08.08(3년,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)
 - 2차 : 2002.08.09 ~ 2005.08.08(3년,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)
 - 3차 : 2005.08.09.~2008.08.08(3년,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)
 - 4차 : 2008.08.09.~2011.08.08(3년,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)
 - 5차 : 2011.08.09.~2014.08.08(3년,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)
 - 6차 : 2014.08.09.~2017.08.08(3년,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,
-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, 신 노년층 등장에 따라 이들에 맞는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.
-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노인복지법 제36조의 1(노인여가복지시설)

-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 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복지시설"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복지 관련 시설,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(재계약)

-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김기곤 (☎ 2133-7799)